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직권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榮洙)가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2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도 3/4분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응답업체 166개사중 34.3%인 57개사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태로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를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직권 하도급실태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인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
 - 조사대상 업체중 74.9%가 대기업과 5년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중 63.7%가 총매출액중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이 50%이상으로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전속적·장기적 거래관계로 인해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등 정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기동조사반' 등을 상시 운영하여 하도급거래관련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관리하고 신속한 직권조사로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단가인하 36.1%, 하도급대금의 60일 초과지급 34.3%, 어음할인료(지연이자)미지급 19.3%, 원사업자의 발주변경(취소등) 4.2% 등으로 조사되어 납품단가 및 하도급 대금의 지불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복수응답)

구 분	①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②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③ 매년단 가인하 (CR)	④ 계약서 미교부	⑤ 검사 결과 미통보	⑥ 원사업자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부)	⑦ 하도급 대금을 물품지급	⑧ 관계기관 신고 이유로 보복조치	⑨ 기 타	합계
비중(%)	34.3	19.3	36.1	1.8	-	4.2	0.6	-	3.7	100%
업체수	57	32	60	3	-	7	1	-	6	166

- 대기업의 납품대금결제방법 중 어음비중은 전년 동기간의 49.5%에서 38.9%로 감소하였으며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도 60일이내가 전년 동기간의 49.1%에서 52.2%로 조사되어 어음의 지급기일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판매(납품)대금 결제비중

기 간	현금(수표, 외상)	어음	기타	합계(비중)
2001.3/4	42.8	49.5	7.7	100%
2002.1/4	46.2	48.2	5.6	100%
2002.3/4	57.3	38.9	3.8	100%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

기 간	① 60일이내	② 61~90일	③ 91~120일	④ 121~180일	합계(비중)
'01. 3/4	49.1	37.4	11.7	1.8	100%
'02. 1/4	60.7	29.5	8.7	1.2	100%
'02. 3/4	52.2	30.6	14.2	3.0	100%



I. 2002. 3/4분기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 목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원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

- 조사기간
 - 조사기 준 일 : 2002. 9. 30
 - 조사대상기간 : 2002. 7. 1 ~ 9. 30
 - 조사실시기간 : 2002. 10. 15 ~ 10. 31
- 조사대상 :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사 300개사
 - 46개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원사중(3,246개사)업종별 무작위 선정
- 조사방법 : 우편(FAX)조사
- 집계·분석 방법 :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
- 조사내용
 - 대기업의 판매(납품)대금 결제방법
 - 하도급거래 관행 및 애로사항
 - 부품단가 결정방법,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등
- 조사일정
 - 조사표 발송 : 2002. 10. 15~10. 16
 - 회수 / 내검 : 2002. 10. 16~10. 31
 - 결과분석 : 2002. 11. 1~11. 4

3. 조사결과 활용

- 대금결제관행 개선을 대기업에게 요구
-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언론보도(일간지, 분회 홈페이지등 게재)



4. 표본현황

구 분	응답업체수	구성비(%)
주거래 대기업 업종별	합 계	215 100%
	자 동 차	71 33.0
	전 자	32 14.9
	전 기	4 1.9
	기 계	35 16.3
	조 선	14 6.5
	화 학	13 6.0
	기 타	46 21.4
주거래 대기업 규모별	합 계	215 100%
	5대그룹 계열사	97 45.1
	6~27대그룹 계열사	39 18.1
	기타그룹 계열사	79 36.8
주거래 대기업과의 거래기간	합 계	215 100%
	1년이내	8 3.7
	1~ 3년이내	22 10.2
	3~ 5년이내	24 11.2
	5~10년이내	46 21.4
	10년이상	115 53.5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별	합 계	215 100%
	10%이내	15 7.0
	10~30%이내	27 12.6
	30~50%이내	36 16.7
	50~70%이내	58 27.0
	70~100%이내	79 36.7

II. 조사결과

1. 주거래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가. 평균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

- 동 조사에 응답한 215개 중소기업체들의 2001년도 평균 매출액은 182억이며 상시종업원수는 88명으로 조사되었음.

나. 주거래 대기업의 업종

- 중소기업체들이 납품하는 대기업은 업종별로 자동차업종 33.0%, 기계업종 16.3% 전자업종



14.9%, 조선업종 6.5%순으로 조사되었음.

다. 주거래 대기업의 규모

- 중소기업업체들이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모는 5대그룹 계열사들이 45.1%, 6~27대그룹 계열사들이 18.1%, 기타 대기업이 36.8% 순으로 조사되었음.

* 5대 기업집단 :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한진

* 6~27대 기업집단 : 포항제철, 롯데,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두산, 동부, 현대정유, 효성,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하나로통신, 한솔, 신세계,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영풍, 대상, 동원, 태광산업, KCC, 동양화학,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02. 9. 2일 기준)

라. 주거래 대기업과의 거래기간

- 중소기업업체들의 대기업과의 거래기간은 10년이상인 53.5%, 5~10년 이내 21.4%, 3~5년 이내가 11.2%순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업체들 대부분이 5년이상 장기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

- 중소기업업체들의 총매출액중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매출비중은 50%이상인 업체가 63.7%, 50%미만인 업체가 36.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래 대기업에 대한 높은 전속적 거래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2. 판매(납품)대금결제 일반현황

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비중

- 중소기업업체들이 주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결제비중은 현금 57.3%, 어음 38.9%로 어음비율이 작년 3/4분기의 49.5%보다 10.6% 감소되어 어음결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의 판매(납품)대금 결제비중

기 간	현금(수표, 외상)	어음	기타	합계(비중)
2001.3/4	42.8	49.5	7.7	100%
2002.1/4	46.2	48.2	5.6	100%
2002.3/4	57.3	38.9	3.8	100%



나.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이용 비중

- 어음대체결제제도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이용비율 26.4%,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비율이 20.9%,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비율 10.4% 등으로 조사되어 작년 3/4분기와 비교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비율이 8%이상 감소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현금성결제의 경우 어음대체결제제도의 이용 비중

기 간	현 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 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합계(비중)
'01. 3/4	50.2	18.9	18.7	12.1	100%
'02. 1/4	51.0	21.6	8.9	18.6	100%
'02. 3/4	42.3	20.9	10.4	26.4	100%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 구매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중소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금융비용(카드수수료)을 납품기업에서 부담】** ('99.11월 도입, 납품일로부터 35일 이내 결제)

②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외서)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구매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용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금융비용(대출이자)을 구매기업에서 부담】** ('00.5월 도입, 납품완료후 38일 이내 결제)

③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 납품중소기업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세금계산서 첨부)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 후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납품대금결제 방식 **【금융비용(대출이자)을 납품기업에서 부담】** 으로 (환)어음실물 발행없이 전자방식(통신 전용선, 인터넷)으로 모든 결제가 완료됨.('01.2월 도입)



다.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

○ 중소기업협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은 60일이내가 52.2%, 61~90일이 30.6%, 90일 이상이 17.2%로 조사되어 작년 3/4분기 보다 60일 이내의 어음발행 비중이 다소 높아졌으나 90일이상의 어음발행 비중도 증가함으로써 어음의 지급기일이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양극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

기 간	① 60일이내	② 61~90일	③ 91~120일	④ 121~180일	합계(비중)
'01. 3/4	49.1	37.4	11.7	1.8	100%
'02. 1/4	60.7	29.5	8.7	1.2	100%
'02. 3/4	52.2	30.6	14.2	3.0	100%

3. 하도급 거래 관행(납품기업 입장)

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경험 여부

○ '02. 3/4분기중 중소기업업체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있다" 13.5%, "없다" 80.5%로 과거에 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경험 여부

기 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합계(비중)
'00. 4/4	36.1	63.9	-	100%
'02. 1/4	13.8	82.0	4.2	100%
'02. 3/4	13.5	80.5	6.0	100%



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매년 단가인하가 36.1%, 하도급대금의 60일 초과지급 34.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19.3%, 원사업자의 발주변경(취소등) 4.2%로 조사되어 납품단가 및 하도급 대금의 지불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복수응답)

구 분	①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②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③ 매년단 가인하 (CR)	④ 계약서 미교부	⑤ 검사 결과 미통보	⑥ 원사업자 발주취소 (물품수량 거부)	⑦ 하도급 대금을 물품지급	⑧ 관계기관 신고 이유로 보복조치	⑨ 기 타	합계
'02. 1/4 비 중 (업체수)	22.4 (15)	19.4 (13)	37.3 (25)	1.5 (1)	3.0 (2)	13.4 (9)	0.0	3.0 (2)	0.0	100% (67개)
'02. 3/4 비 중 (업체수)	34.3 (57)	19.3 (32)	36.1 (60)	1.8 (3)	-	4.2 (7)	0.6 (1)	-	3.7 (6)	100% (166개)

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중소기업협력업체의 대처 방법으로는 대다수 업체인 70.0%가 해당 대기업으로부터의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시정·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정부등 관계기관의 직권조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대처 방법

구 분	① 거래단절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② 대기업에 직접 시정요구	③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신고	④ 시법대응 (민사소송등)	⑤ 잘 모르겠다	합계
'02. 1/4 비중(%)	58.0 (29개)	22.0 (11개)	8.0 (4개)	0.0	12.0 (6개)	100% (50개)
'02. 3/4 비중(%)	70.0 (35개)	4.0 (2개)	4.0 (2개)	2.0 (1개)	20.0 (10개)	100% (50개)

라. 2003년 물량발주에 대한 전망

- 향후 주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물량발주 지속여부에 대하여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58.1%,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22.8%로 나타났으며 특히 완성자동차의 매출증대로 인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납품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물량발주에 대한 전망

구 분	① 매우 안정적	② 조금 안정적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불안정	⑤ 매우 불안정	합계
업체수	49	76	41	35	14	215
비중(%)	22.8	35.3	19.1	16.3	6.5	100%

4. 부품단가 결정방법(납품기업 입장)

가. 대기업의 부품 구매 방법(최초 납품단가 결정방법)



- 원가절감을 이유로 범용부품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22.6%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대기업들의 공개경쟁 입찰방식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부품 구매방법

구 분	일반구매방식 (대기업과 협의)	공개경쟁 입찰방식	기타(수의계약등)	합계
비중(%)	74.8	22.3	3.0	100%

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계약서의 종류

- 대·중소기업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종류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하도급계약서 활용이 50.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이 38.6%, 중소기업청의 표준장기위탁계약서 활용이 2.3%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계약서 종류

구 분	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② 당사자간 자율적인 하도급계약서	③ 중소기업청의 표준장기 (3년이상) 위탁계약서	④ 계약서 체결없이 납품거래함	합계
업체수	83	109	5	18	215
비중(%)	38.6	50.7	2.3	8.4	100%

III.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납품중소기업에게 매년 일정비율씩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



으며 납품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에 응하고 있음

- IMF이후 인건비 및 원재료값 등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하락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등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부품단가 인하를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번영을 위한 대기업의 자율적 지원 및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은 어려울 것임.

< 건의 >

-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실태 직권 조사 강화
 - 납품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의 우려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정기적 직권 실태조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정부에서는 '하도급기동조사반' 등을 상시 운영하여 하도급거래관련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관리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함.